

사회봉사규정

제정 : 2015. 09. 11.

개정 : 2022. 08. 05.

개정 : 2022. 09. 02.

담당 : 지역사회임팩트센터(02-950-5465)

----- 목 차 -----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사회봉사활동 영역)	제4조(사회봉사활동 지원)
제5조(사회봉사활동 학점제)	제6조(봉사상·봉사인증제)	제7조(사회봉사기구)	제8조(단장)
제9조(지역사회임팩트센터의 활동)	제10조(사회봉사운영위원회)	제11조(시행세칙)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한국성서대학교의 설립이념인 밀알정신 구현과 대학의 사회적 책무를 완수하기 위하여 학생 및 교직원의 사회봉사활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사회봉사는 학생·교직원의 교내외 사회봉사활동을 말하며 일정한 보수를 받지 않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활동을 말한다.

제2장 사회봉사활동 영역

제3조(사회봉사활동 영역) ① 교직원의 사회봉사활동 영역은 다음과 같다.

1.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각종 위원 및 지원 활동
2. 비영리 민간 및 공공단체 지원 활동
3. 교회 및 기독교단체에서 실시하는 봉사 활동
4. 유엔(UN)또는 그 산하기구, 기관에서 지구 환경과 세계 시민의 안녕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각종 활동
5. 학생 봉사활동 지도
6. 국내외 천재지변으로 인한 재해 시 봉사활동
7. 기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각종 사회봉사 활동

② 학생의 사회봉사활동 영역은 다음과 같다

1. 사회 복지시설 및 기관 봉사활동

2. 공공기관 봉사활동 : 관공서 및 학교, 의료기관 등의 봉사활동
3. 공익 봉사활동 : 헌혈, 환경보존활동, 청소년 지도활동, 공익단체 활동 등
4. 종교단체에서 실시하는 봉사활동
5. 지역사회 봉사활동 및 사회 소외계층 지원 활동
6. 기타 전공과 관련된 봉사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실시하는 봉사활동
7. 기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각종 사회봉사 활동

제4조(사회봉사활동 지원) 대학은 사회봉사 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봉사활동 수행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적극 지원한다.

제5조(사회봉사활동 학점제) 사회봉사 활동을 활성화시키기 위하여 학점을 부여할 수 있다.

제6조(봉사상·봉사인증제) ① 사회봉사활동 실적이 우수하여 사회발전에 크게 이바지한 학생에게는 학생상별규정에 의하여 봉사상을 수여할 수 있다.

② 사회봉사활동 실적이 우수할 경우 총장은 그 실적을 평가하여 학생에게 봉사인증서를 수여할 수 있다.

제3장 지역사회임팩트센터

제7조(사회봉사기구) 본교 사회봉사 활동을 종합적으로 관리, 운영하기 위하여 한국성서대학교 지역사회임팩트센터를 둔다.(개정 2022.08.05)(개정 2022.09.02)

제8조(센터장) 센터장은 학사 부총장의 추천을 받아 총장이 임명한다.(개정 2022.09.02.)

제9조(지역사회임팩트센터의 사회봉사활동) 지역사회임팩트센터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활동을 한다.(개정 2022.09.02.)

1. 사회봉사활동 기획과 집행
2. 봉사 지원 기금 확보 및 운영
3. 사회봉사활동 및 관련 사업에 대한 홍보
4. 봉사자 및 봉사 수요기관 상담
5. 국내 및 해외 봉사단 파견 및 교육
6. 대외협력 및 지역사회연계 사업 추진
7. 기타 본 봉사단의 목적에 맞는 사업

제4장 사회봉사운영위원회

제10조(사회봉사운영위원회) 학생 및 교직원 봉사활동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사회봉사운영위원회를 설치하고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제5장 기 타

제11조(시행세칙)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15년 09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22년 08월 0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22년 09월 02일부터 시행한다.